

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교부용) 개정대비표

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(교부용)</p> <p>제 1 조 (적용범위) ~ 제 7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용도) (기재생략)</p> <p>제 8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절차) ①~③(기재생략) ④(신설)</p> <p>제 9 조 (결제방법) ~ 제 15 조 (통지의 효력) (기재생략)</p> <p>제 16 조 (약관 변경) ①~⑤(삭제)</p> <p>제 17 조 (이의 제기) (기재생략)</p> <p>제 18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①(기재생략)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(삽입) 금융결제원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 19 조 (준거법) (기재생략)</p>	<p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(교부용)</p> <p>제 1 조 (적용범위) ~제 7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용도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8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절차) ①~③(현행과 같음) ④ <u>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이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.</u></p> <p>제 9 조 (결제방법) ~ 제 15 조 (통지의 효력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6 조 (약관 변경) <u>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.</u></p> <p>제 17 조 (이의 제기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8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①(현행과 같음)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<u>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금융결제원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제 19 조 (준거법) (현행과 같음)</p>	<p>(신설) 만기일 60일 초과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이자부담 주체 명시</p> <p>문구수정 (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준용)</p> <p>문구수정 (관련 법령 추가)</p>

2. 개정시행일 : 2017년 12월 29일

3.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개정 약관 적용 여부: 적용